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4 호 2022. 3. 1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2호[당사1지구·당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55호[하천점용 변경허가(협의)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7호[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31호[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11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52호

당사1지구·당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사1지구·당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7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구명	위치	필지수	면적(m ²)
당사1지구	당사동 28-3번지 일원 (우가항 일원)	221	67,762
당사2지구	당사동 250-1번지 일원 (당사해양낚시공원 일원)	179	62,872
합 계		400	130,634

-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측량·조사에 관한 사항

- ① 지적재조사지구 내·외 경계확정
- ②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③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④ 경계설정
- ⑤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건물·구조물 등의 위치 포함)
- ⑥ 필지별 면적산정
- ⑦ 경계조정 및 협의
- ⑧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
- ⑨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⑩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및 경계확정측량
- ⑪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⑫ 측량성과물 작성
- ⑬ 기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요청하는 필요사항으로써 LX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55호

하천점용 변경허가(협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 효성		
주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번길 13-4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17-12번지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오수관로 매설)	점용 면적	○ 11m ²
점용 기간	○ 당초 : 2017. 1. 20. ~ 2022. 3. 4. ○ 변경 : 2017. 1. 20. ~ 2022. 4. 30.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327호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해당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 '98~'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 '12~'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21년도 기본직불금을 등록하였으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하고 (3)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3. 기본직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및 농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농가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

관계증명서에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녀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으로 산정시 120만원 미만인 경우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4. 지급단가

가.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기본직불 등록자의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하여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면적) 유형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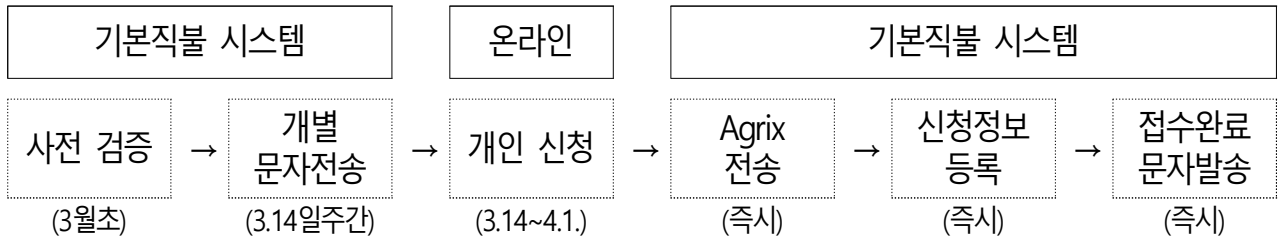
- 현재의 지목과 관계없이 종전의 '17~'19년도 쌀직불금을 받은 경우 논, 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은 경우 밭으로 단가 적용

-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까지 지급 상한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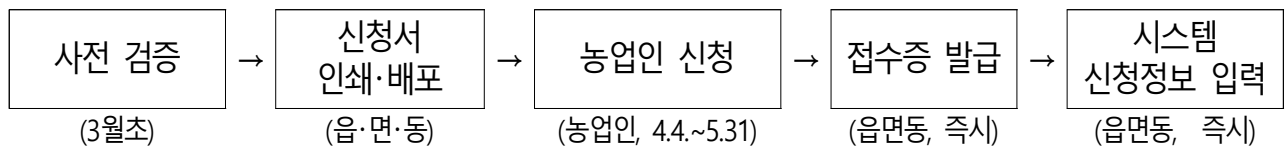
5.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2. 3. 14. ~ 4. 1.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나. 방문 신청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2. 4. 4. ~ 5. 31.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하나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일정 부분을 충족한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배포
 - * (농업인·농업법인) '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기존수혜자, (농지) '17~'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면적 0.1ha 이상인 경우, (소농) 농촌거주·영농종사 연속 3년 등 충족한 농업인은 소농신청서 배포
 - 등록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21

년 기본직불 지급받은 면적, 사전 안내문을 참고하여 폐경 면적은 신청 면적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골재채취장·양어장,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조경수, 관목수 등 식재), 공사장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면적

- 소농신청서를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을 받아 읍·면·동에 제출

* 서명이 불가능할 때 농가 구성원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향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을 진행할 예정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대상서류는 제출이 원칙.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은 생략 가능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 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p>※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 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중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중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중중회의록
3. 승계대상자	<p>※ 승계대상자는 우선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4.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필수	<p>※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5.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p>※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정보

○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접 읍·

면·동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 등을 통하여 대리 신청 가능

- 임대차계약서 등 신청 기간 내에 준비가 어려우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우선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고 9.10일 이내 보완

6. 유의 사항

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접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
- 읍·면·동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나. 기본직불 등록신청정보 수정

- 농업인이 신청한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9.10일까지 변경등록 가능
- 기본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농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 후 관할 읍·면·동에서는 등록사항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읍·면·동의 요청에 적극 협조
- * 자격요건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일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다.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기본직불 등록신청자는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사

업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331호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 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5일

산림청장

1.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3. 5.(토) ~ 4. 17.(일) / 44일간

나.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5%가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 군청 · 구청(읍 · 면 ·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